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략수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28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조문별 검토	9
가. 총칙(안 제1장)	9
나. 전략수출금융기금(안 제2장)	12
다. 전략수출상생기여금(안 제3장)	29
라. 보칙(안 제4장)	39
마. 부칙	4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6. 1. 23.

다. 회 부 일 : 2026. 1.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각 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방위산업 등 대규모 수출수주 프로젝트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이러한 수출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기술뿐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이 계약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므로,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자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있음.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한편 구매자금융, 수출산업협력 등이 수반되는 수출계약의 경우,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반면, 수출 성과는 해당 수출기업만 향유하고 1~2차 공급업체 등 수출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금융지원 등으로 발생한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향후 수출금융 및 산업생태계 지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 수출산업협력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을 통한 전략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구매자금융 등의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에 1천분의 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의 경우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함(안 제11조 부터 제12조까지).

마.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사.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최근 수출규모 확대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 지원 필요성 및 지원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방위산업, 원전 등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 수주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021~2025년 수출액 및 수출금융 지원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액(억불)		6,444	6,836	6,322	6,836	6,401(11월)
수출금융 지원액 (조원)	수은	72.4	76.7	76.3	81.7	86.7
	무보	195.9	238.4	244.8	236.6	268.0

자료: 재정경제부

그런데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는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가령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동일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¹⁾.

2025년 9월 말 기준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일인에 대하여 약 10.5조원 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자기자본 26.2조원)으로, 각국의 방위비 지출

1) 제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③ 수출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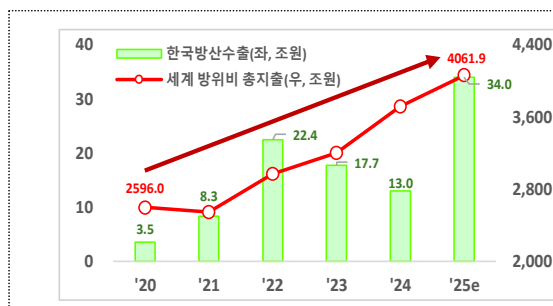
확대 및 방산기술 고도화 등에 따라 향후 이러한 지원여력을 상회하는 수출계약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²⁾.

한편, 이처럼 수출기업들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출수주에 따른 이익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특히 대규모 수출수주에 동반되는 구매자금³⁾, 절충교역⁴⁾ 등의 경우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수출수주에 따른 위험을 부담함에도 그 혜택은 수출기업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에 대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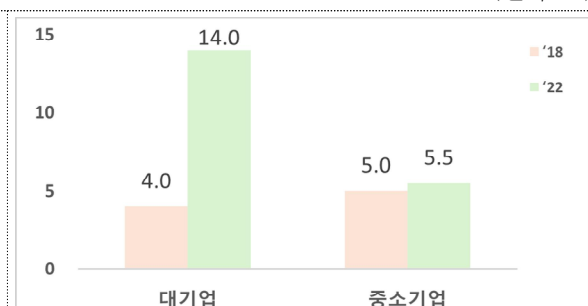
[한국방산수출 및 세계 방위비 총지출]

[방산기업 규모별 영업이익률]

(단위: %)



자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韓 국방부



자료: '23년 방산기업 실태조사

이에 제정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대규모·장기 수출계약 수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이 해당 지원과 결부된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 2) 가령 2025년 7월 폴란드 K2전차 180대 도입 계약은 약 8.8조원 규모로, 단일 방산 수출 규모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함
- 3) 외국 발주자·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
- 4)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응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대응구매 등을 실시하는 것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수주에 따른 이익을 타 수출금융 지원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환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4개 장 15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안 제1장)	- 목적: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정의: 수출, 전략수출,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국내정책금융 기관, 수출산업협력에 대해 정의
전략수출금융 기금 (안 제2장)	- 기금의 목적: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 기금의 관리·운영주체: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의 계정: 수출금융지원계정(전략수출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등)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으로 구분 -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원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 - 자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 -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전략수출상생 기여금 (안 제3장)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구매자금융, 낙찰조건부 EDCF, 절충교역 등 지원과 결부되어 수출계약이 체결된 자는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납부 - 기여금의 납부: 기여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되며, 그 중 일정 비율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

구 분	주요내용
보칙 (안 제4장)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을 통해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징계·문책 등을 면제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에 따른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 공포 시 지체없이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봄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귀속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 - 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납부기술료의 근거법률에 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귀속 근거를 규정

제정안은 대규모·장기 수출계약 수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욱이 이러한 수출 수주의 효과가 연관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업생태계 성장 및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현행 수출금융 지원체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전략수출 분야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원역량 집중을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수출분야 또는 기업이 현행 지원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대규모·장기·신시장 수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및 정책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⁵⁾⁶⁾, 지원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규모 수출수주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기업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납부의무자로 특정되는 경우 역외보조금 논란⁷⁾ 등 통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수출기업에게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적정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5) 대규모 수출수주 계약의 경우 통상 수입자 측에서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의 제공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6) 신시장의 경우, 재정경제부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특별계정 등을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 가능했던 저신용국(예: OECD 국가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원을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계획임

7) 현재 유럽연합의 경우 EU에 신고되지 않은 국가 보조금(역외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조문별 검토

가. 총칙 (안 제1장)

제 정 안
○ 목적 -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정의 - 수출: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 - 전략수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 - 수출산업생태계: 수출 산업을 구성하거나 공급망을 통해 연계되어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 - 구매자금융: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 - 국내 정책금융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수출산업협력: 「방위산업발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

안 제1장은 제정안의 목적을 명시하고,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의 정의와 관련하여, ‘전략수출’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안 제2조 제2호는 ‘전략수출’을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로 정의하고 있는데, 법문언만으로는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

현행 법률에 따른 수출금융지원 대상과 구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특히 제정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현행 수출금융지원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규모, 장기, 신시장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수출분야까지 전략수출에 포함되는 경우 지원역량이 분산됨에 따라 법 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구매자금유 관련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전략수출금융기금 역할 비교]

구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략수출금융기금
구매자금유 지원 방식	대출 · 보증	보험 · 보증	대출 · 보증
지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내	보증배수 등 범위 내	지원여력 내
지원 기간	2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이상 초장기
저신용국 지원	제한적 지원	제한적 지원	지원 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따라서 전략수출의 판단기준 ·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전략수출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기존 정책금융과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 기금의 목적 · 취지 및 기존 정책금융과의 협업체계 등을 제정안의 목적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전략수출”이란 제1호에 따른 수출로서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을 말한다. 3. “수출산업생태계”란 수출 산업을 구성하거나 공급망을 통해 연계되어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한다. 4. 제11조제1항의 “구매자금융”이란 외국 발주자 또는 수입자가 수출자와의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보증, 보험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5. 제4호의 국내 정책금융기관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6. “수출산업협력”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출산업협력을 말한다.

나.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안 제2장)

1)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안 제3조부터 제5조의2까지 및 제7조·제8조)

제 정 안
○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 목적: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 기금의 계정 1) 수출금융지원계정 • 자원: ① 정부 출연금, ②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③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④ 전략수출상생기여금, ⑤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⑥ 수출금융지원계정 운용수익금, ⑦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용도: ①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② 수출금융지원계정 운용비용, ③ 차입금·이자 상환, ④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 • 자원: ①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원계정에서 출자·투자한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③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④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운용수익금, ⑤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차입금,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용도: 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 운용비용, ③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투자, ④ 차입금·이자 상환,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은 각 계정의 여유자금을 국·공채 매입, 금융기관 예치·대여, 그 밖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 정 안

－ 기금의 회계・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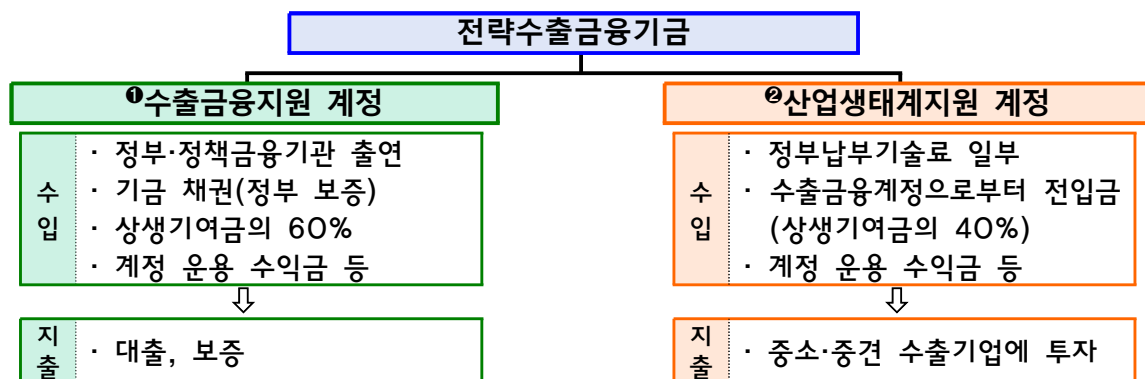
-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고,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며 부족한 경우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함

안 제3조 등은 제정안에 따른 전략수출 및 수출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전략수출금융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되는데, 수출금융지원계정은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전략수출 분야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실시하는 계정이며,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정부납부기술료와 수출금융지원계정에서 전입된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수출산업생태계에 속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실시하는 계정임.

[전략수출금융기금 구성]



자료: 재정경제부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며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 신설 심사 요건으로 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⁸⁾, 해당 기준에 따라 기금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

전략수출금융기금 중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과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이라는 목적사업과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8)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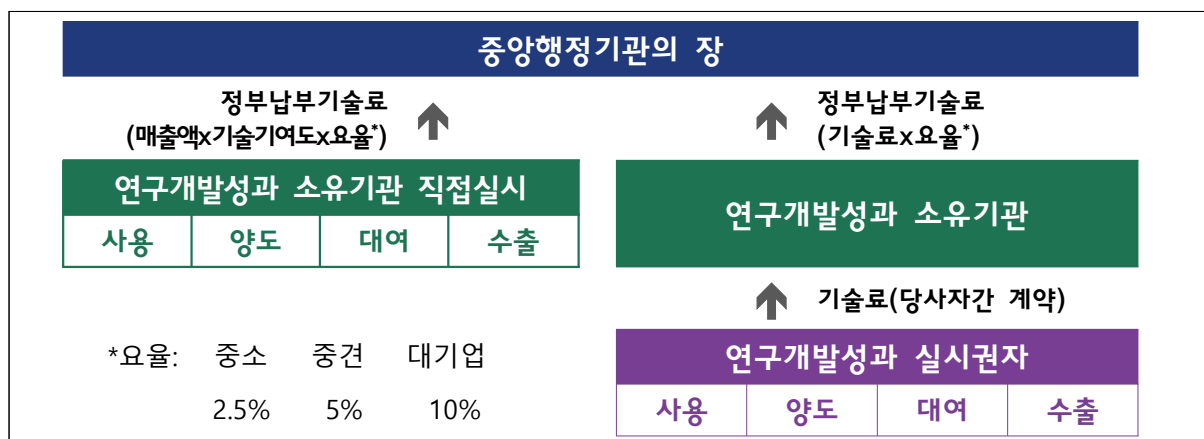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반면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금액을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납부기술료는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정부납부기술료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된 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사용·양도·대여·수출을 통해 수익을 획득한 경우 그 일부를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에게 납부하는 것임.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개념도]



그런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중에는 전략수출 분야와 무관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를 통한 수익 중에는 수출성과와 무관한 수익도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납부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일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함.

또한, 기술료 징수의 근거법률 중에서는 징수한 기술료를 관련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⁹⁾, 정부납부기술료를

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아 신기술을 사업화한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려는 경우 법률 간 정합성을 위하여 해당 근거법률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정안이 전략수출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수출기업이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관련 산업생태계 전반에 환류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고려할 때, 동 계정의 지원대상이 되는 수출기업의 범위를 전략수출 분야 산업생태계에 속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

전략수출금융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수주에 대응하여 적기에 구매자금 등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으로서, 수출수주의 빈도 및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축적 사업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3)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중장기적 안정성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재원은 정부 출연금,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수출지원을 받은 기업이 납부하는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등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세계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기조 등으로 전략수출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기회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수출수주에 대한 글로벌 경쟁 심화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과 관련된 사업에 기술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 국가 차원에서 전략수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4) 기금 설치의 효과성

현재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 융 등의 수출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그동안 제도적 제한으로 정책금융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대규모·장기 수출수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별도 기금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기존 수출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과 재원, 용도를 ‘전략수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재정법」은 정부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¹⁰⁾, 전략수출금융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95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10)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는 기금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적절한 운용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기금의 용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수출기업의 이익 환류라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산업생태계지원 계정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안 제6조)

제 정 안
○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봄 -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재정법」¹¹⁾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안 제6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지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해당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채무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이 가능하고, 채권 관리 부실 등으로 주채무자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정 보증총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보증채무에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 있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보증채무 규모는 13.0조원(GDP 대비 0.5%)임¹²⁾.

11)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보증채무는 2025년 말 16.7조원에서 2029년 말 80.5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제정안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이 추가되는 경우 국가보증채무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됨.

[2025~2029년 보증채무 잔액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한국장학재단채권	11.0	12.2	13.4	14.5	15.6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4.2	10.3	14.9	18.7	21.4
첨단전략산업기금 채권	1.5	16.5	26.2	35.4	43.5
계	16.7	39.0	54.5	68.6	80.5
(GDP 대비)	(0.6)	(1.4)	(1.9)	(2.3)	(2.6)

자료: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주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2025년 말까지 기 발행한 보증채권을 전액 상환함

주2: GDP 대비 보증채무 비율은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을 반영한 수치임

따라서 제정안 심사 시 전략수출금융채권의 위험 관리방안 및 적정 발행규모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구체적인 수출금융지원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정확한 채권발행규모 예측은 어렵다는 입장임.

한편, 「한국산업은행법」은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와 시행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그 운용이 종료되는 날까지 채권 상환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¹³⁾,

13) 「한국산업은행법」

부칙 <법률 제17253호>

제2조(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25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금의 조성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고 있음¹⁴⁾.

따라서 국가보증채무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경우에도 기금 규모 및 채권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한 상환 기한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칙 <법률 제21048호>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부칙 <법률 제19828호>

제2조(기금의 조성기간) 제38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3) 자금지원 (안 제9조)

제 정 안
○ 자금지원 -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 다만,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으며, 이후 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 시 지원목적 외 사용 제한, 기금 설치목적 위배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안 제9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자금지원 시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심의회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의 적정성 및 사후 관리·감독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략수출의 특성상 대규모·장기 지원의 비중이 높고 기금의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다른 수출금융지원에 비해 엄격한 사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출연금 및 국가보증채무가 투입되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 생략 기준을 심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법률에 대략적으로 명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심의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자금지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사후감독 등 관리·감독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 (안 제10조)

제 정 안
○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 - 소속: 한국수출입은행 - 심의사항: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② 기금운용계획, ③ 기금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④ 결산보고사항, ⑤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위원장 1명(한국수출입은행장)을 포함하여 금융·경제·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 위원

안 제10조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한국산업은행법」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와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으며¹⁵⁾,

15)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기간산업안정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 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¹⁶⁾.

제정안과 관련하여, 안 제9조에서 전략수출금융기금의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16)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
5.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6.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7.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6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 정 안

제5조의2(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3.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

제 정 안

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 채증권으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운용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기금의 회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손실금을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

제 정 안

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5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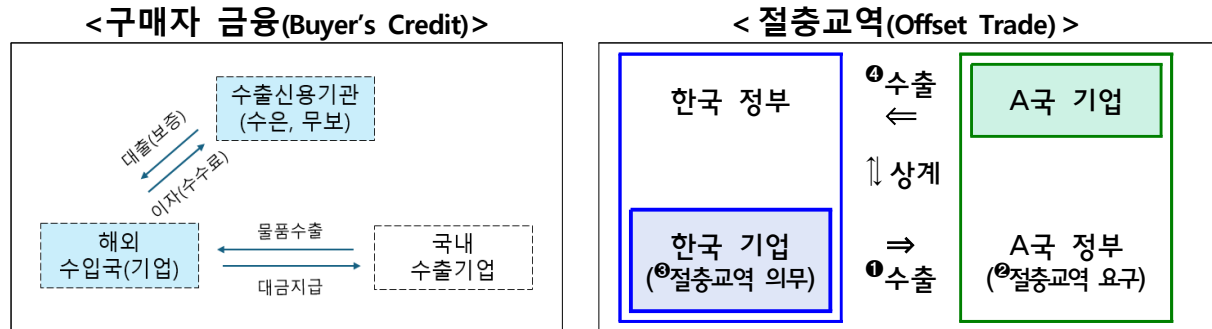
다. 전략수출상생기여금 (안 제3장)

제 정 안
○ 기여금의 산정·감면 - 납부의무자: ① 구매자금융 지원, ②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 ③ 「방위산업 발전법」에 따른 절충교역 등 지원,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과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 산정방식: (해당 지원 집행금액) $\times [1\% \text{ 이내} (「방위산업 발전법」 상 지원의 경우 5\% \text{ 이내}) \text{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 - 감면조건: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 기여금의 납부·징수 - 부과방법: 정책금융기관은 금융지원 승인 시 2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금융지원 집행 시 그 날 또는 집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의 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 - 납부방법 : 현금납부 원칙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유가증권 납부 인정 가능 천재지변, 경영상 위기 등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유예·분할납부 허용 가능 - 체납절차: 기여금 체납액의 3% 이내에서 가산금 부과·징수 가능 기여금·가산금 미납 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기여금의 귀속: 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

안 제3장은 구매자금융, 낙찰조건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¹⁷⁾,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 절충교역 등을 통해 수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17)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낙찰조건부 지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이 참여하는 국제경쟁입찰에서 경쟁국의 자국민 낙찰조건부 양허성 자금 지원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국민의 수주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의 낙찰을 조건으로 기금을 지원(이하 “낙찰조건부 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도국 정부 등의 지원요청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른 수출금융지원으로 환류하거나 산업생태계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른 기여금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되어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 등에 사용되며, 기여금의 일정 비율¹⁸⁾은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되어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될 예정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¹⁹⁾, 제정안에 따른 기여금은 부담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음.

18) 재정경제부는 기여금의 40%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하도록 할 계획임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구매자금용, 낙찰조건부 EDCF 등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위험 또는 부담을 감당하는 구조임에도 수주에 따른 이익은 전적으로 수출기업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기업이 지원금의 일정 부분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함으로써 수출 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전 산업생태계로 환류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여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여금 납부의무자의 범위 및 납부 기준과 기여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고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일 것, ② 부담금의 부과를 통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 ③ 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조세 외적 부담을 질 만한 집단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집단에 대해서만 부과될 것, ④ 부담금의 수입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제시하고 있음²⁰⁾.

그런데 제정안은 납부의무자를 구매자금용 지원, 낙찰조건부 EDCF 지원 등과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로 규정하면서 계약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기여금의 주된 용도가 전략수출을 위한 수출금융 지원임을 고려할 때 납부의무자를 ‘전략수출 분야에서 수출 계약이 체결된 자’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 헌법재판소 1999.10.21. 선고 97헌바84결정 등

또한,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 절충교역 등에 상응하는 기여금 납부가 방산분야 수출기업과 타 수출기업 간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는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방산분야 수출기업에 대해서만 「방위산업발전법」에 따른 절충교역 등 지원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기여금은 별도의 구분 없이 전략수출금융기금에 귀속되어 방산분야를 포함한 전체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게 됨.

이에 따라 방산분야 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타 산업 분야를 교차보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충교역 등에 따라 납부한 기여금의 용도를 방산분야 지원으로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여금은 수출기업에 대하여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신설하는 것으로, 구매자금융 등의 공급 규모, 현행 수출금융지원 금리, 수출수주에 따른 영업이익률 및 기여금 납부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부과요율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최근 10년간 수출금융 및 구매자금융 공급 실적]

(단위: 조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한국수출입은행	69.2	60.9	58.0	59.9	73.3	72.4	76.7	76.3	81.7	86.7
총 지원실적										
구매자금융	5.9	2.6	3.4	2.8	2.3	2.2	1.5	3.0	7.1	8.6
(대출·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156.6	144.7	148.6	155.8	165.1	195.9	238.4	244.8	236.6	268.0
총 지원실적										
중장기										
수출보험	5.7	6.4	8.3	3.9	3.9	2.9	3.9	14.8	7.6	11.3
(구매자금융)										

자료: 재정경제부

주: 다만, 제정안에 따른 기여금 부과 대상은 '구매자금융과 결부되어 수출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표의 구매자금융 전체가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구매자금융과 낙찰조건부 EDCF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액의 0.5%, 절충교역에 대해서는 교역액의 3~5%를 기여금으로 부과할 계획임.

구분	정책금융 (구매자금융, 낙찰조건부 EDCF)	절충교역
부과 표준	정책금융 집행액	절충교역액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한정)
부과요율*	기본 0.5%	3%~5% (절충교역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 시점	해당 수출건에 대한 집행시점마다	

자료: 재정경제부

* 저신용·초장기 등 추가 위험이 수반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0.075%~0.5%까지 가산 가능

둘째, 기여금 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여금은 납부의무자에 대한 지원금액과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기여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지원은 그 집행금액이 정확히 산출되는 것이어야 함. 또한, 기여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업을 대신하여 수출수주에 따른 위험 또는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기여금 부과 대상이 되는

지원은 수출수주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런데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위산업발전법」의 지원사항 중에는 애로사항 해결 지원, 교육훈련 등 그 집행금액이 정확히 산출되기 어렵거나, 정부가 별도의 위험부담을 감당하지 않는 지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지원금액을 보다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방위산업발전법」

제15조(수출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등 및 국방 과학기술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라 구매국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대응구매 및 기술이전
2.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또는 수출산업협력 협상방안으로 수출업체 지원 사항 반영
3. 해외진출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등 생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와 그 해결을 위한 지원
4. 민간통상협력 및 산업협력
5. 교육훈련 및 홍보지원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6조(수출산업협력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구매국으로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국과의 협의를 통한 반대급부 간의 상호 감면 또는 면제
3.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 계약상대방이 수출산업협력을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와 그와 관련한 구매국과의 협의

한편, 안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21)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을 기여금 산출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법률에서 하위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인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21) 재정경제부고시

있으므로 낙찰조건부 지원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여금의 존속기한과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²²⁾²³⁾.

또한,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하고 있음²⁴⁾.

따라서 전략수출 지원 및 수출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여금의 존속기한 규정이 필요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납부의무자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2)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3) 가령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월 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음

24) 제5조의4(권리구제절차)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한편,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²⁵⁾, 기여금 설치를 위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기여금의 설치 근거를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293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수입자와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건설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²⁶⁾,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랜트 수주 등의 경우와 같이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납부의무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산업통상부는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발주자에게 정책금융 수혜기업으로 인식되는 경우 역외보조금 논란 등으로 현행 및 향후 원전 수주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5)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6) 제정안에 따르면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인데, 이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기여금 부과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모기업인 국내기업에게 기여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1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결부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이 실제 집행된 시점마다 집행금액(단, 제3호의 경우에는 수출산업협력 지원 금액으로 본다)과 1천분의 10(단, 제3호는 1천분의 50으로 본다)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구매자금융 지원 2.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낙찰조건부 지원 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여금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기여금과 별개로 부과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여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④ 그밖에 기여금의 산정, 감면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여금의 납부 등) ①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 승인시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정책금융기관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금융지원을 집행시 그 날 또는 금융지원의 집행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여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기여금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해당 내역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제 정 안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유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의 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납부의무자가 기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기여금 및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기여금은 기금의 수출금융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다만,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전입한다.
- ⑧ 재정경제부장관은 기여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⑨ 그 밖에 기여금의 부과·징수·납부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보칙 (안 제4장)

제 정 안

-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을 통해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출자 이후 그 외 사유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함
-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중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징계·문책 등을 하지 아니함
-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 기금이 자금지원을 위하여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27)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음
 - 기금이 자금지원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양수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29)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원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27)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8) **제165조의15(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①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주권 관련 사채권, 그 밖에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경영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29)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

안 제4장은 출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자금지원 시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한도 예외 적용 등 법률 시행에 부수될 필요가 있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한국산업은행법」도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 개정안과 유사한 보칙규정을 두고 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하지 못한다.

다만, 전략수출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³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칙에 심의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³¹⁾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제48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1)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금품의 수수, 공무상 비밀누설과 같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5조의2에 따라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5조의2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면제한다
제15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부칙

제 정 안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 정부는 이 법 공포 시 지체없이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봄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함 ○ 다른 법률의 개정 - 정부납부기술료의 근거법률에 기술료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 귀속 근거를 규정함

제정안 부칙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공포 후 즉시 편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략수출금융기금심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심의회 의결을 거쳐 계획안을 편성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 시행 전에 심의회 구성 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칙 제2조는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심의·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기금운용계획 확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므로³²⁾,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32)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경우가 아닌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에 확정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중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2026년도에 발행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산업통상부는 부칙 제5조의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귀속시켜 총괄 관리·운용하고 있으므로³³⁾, 전략수출금융기금 전출금액 산출 등 기술료 관리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기술료를 우선 산업기술혁신계정에 귀속시킨 후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33)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이 끝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특례) 정부는 이 법이 공포된 때에는 지체없이 2026년도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회의 심의·의결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전략수출상생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에 따른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②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④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

제 정 안

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각군과 방위사업청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⑦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⑧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납부받은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정 안

제9조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⑫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⑮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정 안

제34조제2항 중 “기술료를”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⑩ 원자력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과 제7항을 각각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로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⑪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기술료는”을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산입하고, 나머지 기술료는”으로 한다.

⑫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동법 제5조의2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의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된다.

문 의 처

02)6788-5160